

# 김해 대동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 대동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18년 1월 25일

김 해 시 장

## □ 관리기본계획 내용

### ○ 용도별 관리계획 면적

구 분	총면적	산업시설 구 역	복합구역	지원시설 구 역	공공시설 구 역	녹지구역	기 타
면 적(m <sup>2</sup> )	2,806,840	1,190,010	159,064	42,803	734,141	547,056	133,766
구성비(%)	100.0	42.4	5.7	1.5	26.2	19.5	4.8

○ 유치업종 : 관리기본계획 “업종배치계획” 참조

※ 열람 장소 : 김해시 도시개발과 (☎ 055-330-6853)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첨 : 김해 대동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. 끝.

#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## 1. 산업단지 개요

가. 관리기관 : 김해시(사업시행자 :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(주))

### 나. 조성목적

-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고 동·서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
- 계획적·체계적인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산업집적화를 통해 산업 생산성을 제고
- 첨단업종의 육성기반 및 친환경적인 산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

### 다. 추진경위

- 2014. 08. 26 : 사업협약체결(공공기관, 건설투자자, 실수요자, 금융기관)
- 2015. 03. 18 :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 등기
- 2015. 09. 11 :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(김해시고시 제2015-155호)
- 2016. 04. 01 : 2016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
- 2016. 12. 29 :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
- 2017. 01. 02 ~ 2016. 01. 31: 주민의견청취
- 2017. 01. 13 : 합동설명회 개최
- 2017. 01. ~ 2017. 05 : 관련부서/기관 협의
- 2017. 02. 23 : 사업설명회 개최
- 2017. 03. 16 : 김해시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) 결정 변경 승인 고시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148호)
- 2017. 05. 25 :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
- 2017. 06. 29 :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(김해시 고시 제2017-172호)

## 라. 분양 현황

### ○ 용도별 분양현황

구분	총면적 (㎡)	분양 가능 면적 (㎡)					조성 기간	사 업 시행자
		분양	미분양			계		
			조성	조성 중	소계			
계	2,806,840	-	-	2,806,840	2,806,840	2,806,840	2018 ~ 2020	김해대동 첨단산업 단지(주)
산업시설 구역	1,190,010	-	-	1,190,010	1,190,010	1,190,010		
복합구역	159,064	-	-	159,064	159,064	159,064		
지원시설 구역	42,803	-	-	42,803	42,803	42,803		
공공시설 구역	734,141	-	-	734,141	734,141	734,141		
녹지구역	547,056	-	-	547,056	547,056	547,056		
기 타	133,766	-	-	133,766	133,766	133,766		

※ 기타는 근린생활시설, 공동주택, 단독주택임

## 마. 입주계획(예정)

구분	입주업체 수					면적(㎡)				
	계	산업 시설	복합 시설	지원 시설	공공 시설	계	산업시설	복합시설	지원시설	공공시설
실수요자	383	270	41	53	19	1,519,429	1,190,010	159,064	42,803	127,552

## 바. 입지여건

시설명	현 재	확충계획		
		일 정	규 모	시행기관
도 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앙고속도로(대동IC), 부산 외곽순환도로 인접</li> <li>• 국지도69호선 인접</li> </ul>	-	-	-
철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구포역(7km 내외) 이용</li> </ul>	-	-	-
항 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김해국제공항(10km 내외) 이용</li> </ul>	-	-	-
항 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산신항만 이용</li> </ul>	-	-	-
용 수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업용수 : 8,190m<sup>3</sup>/일</li> <li>• 생활용수 : 4,451m<sup>3</sup>/일</li> </ul>	김해시
전 력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시설 : 63,981kW</li> <li>• 기타시설 : 34,991kW</li> </ul>	한국전력공사
연 료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시설 : 74,321천Nm<sup>3</sup>/년</li> <li>• 기타시설 : 8,375천Nm<sup>3</sup>/년</li> </ul>	(주)경남에너지
통 신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시설 : 12,408회선</li> <li>• 기타시설 : 8,029회선</li> </ul>	(주)KT
환 경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폐기물처리시설</li> <li>- 면적 : 25,290m<sup>2</sup></li> </ul>	실수요자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질오염방지시설</li> <li>- 오수발생량 : 4,260m<sup>3</sup>/일</li> <li>- 폐수발생량 : 2,697m<sup>3</sup>/일</li> <li>- 총 시설용량 : 7,000m<sup>3</sup>/일</li> </ul>	김해시

## 2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### 가. 관리기본방향

- 부산·경남 광역도시권의 지리적 중심지로 주변지역과 협력적 벨트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으로 국가발전 성장동력의 선도적 역할 수행
- 업종군 단위의 업종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업종의 집산화 및 합리적 배치
- 환경 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·운영

### 나.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

#### 1) 용도별 구획면적

구 분	총면적	산업시설구 역	복합구역	지원시설 구 역	공공시설 구 역	녹지구역	기 타
면 적(m <sup>2</sup> )	2,806,840	1,190,010	159,064	42,803	734,141	547,056	133,766
구성비(%)	100.0	42.4	5.7	1.5	26.2	19.5	4.8

※ 기타는 근린생활시설, 공동주택, 단독주택임

#### ○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

구 분	면 적(m <sup>2</sup> )	비 고
계	28,790	
변 전 소	3,500	
폐 기 물 처 리 시 설	25,290	

※ 세부시설내역

- 산업시설구역 : 1,190,010m<sup>2</sup>(산업시설용지 1,161,220m<sup>2</sup>, 변전소 3,500m<sup>2</sup>, 폐기물처리시설 25,290m<sup>2</sup>)
- 복 합 구 역 : 159,064m<sup>2</sup>(복합용지 159,064m<sup>2</sup>)
- 지원시설구역 : 42,803m<sup>2</sup>(지원시설용지 42,803m<sup>2</sup>)
- 공공시설용지 : 734,141m<sup>2</sup>(도로 455,693m<sup>2</sup>, 주차장 56,634m<sup>2</sup>, 하천 66,837m<sup>2</sup>, 광장 23,220m<sup>2</sup>, 공공공지 933m<sup>2</sup>, 학교 12,620m<sup>2</sup>, 공공청사 5,924m<sup>2</sup>, 종합문화복지센터 6,167m<sup>2</sup>, 컨벤션/기업지원센터 20,090m<sup>2</sup>, 구거 6,397m<sup>2</sup>, 우수지 53,509m<sup>2</sup>, 수질오염방지시설 26,117m<sup>2</sup>)
- 녹 지 용 지 : 547,056m<sup>2</sup>(공원 279,180m<sup>2</sup>, 녹지 267,876m<sup>2</sup>)
- 기 타 : 133,766m<sup>2</sup>(근린생활시설 25,278m<sup>2</sup>, 공동주택 66,194, 단독주택 42,294m<sup>2</sup>)

## 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### 가) 산업시설구역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산집법”) 제2조 제1호에 의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
-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(김해시 고시 제2017-172호, 2017. 6. 29.)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

### 나) 복합구역

- 「산집법」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(도시형공장, 첨단업종 및 부대시설)
-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들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(김해시 고시 제 2017 -172호, 2017. 6. 29.)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

### 다) 지원시설구역

- 「산집법」 제2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
- 「산집법」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 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-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들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(김해시 고시 제2017- 172호, 2017. 6. 29.)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

### 라) 공공시설구역

-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주차장법에 따른 허용 가능한 시설
-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들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을(김해시 고시 제2017-172호, 2017. 6. 29.) 준용하여 적용한다.

### 마) 녹지구역

-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

## 3) 용도별 구획 평면도 : 별첨 1 참조

## 다. 업종별 배치계획

### 1) 용도별 배치계획

구 분	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		면 적(m <sup>2</sup> )	위 치	업체수
계	-		1,240,752	-	
복합산업	C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의약품 제외	541,440	A1 ~ A16	
	C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	
	C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		
	C24	1차 금속 제조업			
	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;기계 및 가구 제외			
	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	
	C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	
	C28	전기장비 제조업			
	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
	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	
	C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		
메카닉스	C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425,247	A23 ~ A31	
	C24	1차 금속 제조업			
	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;기계 및 가구 제외			
	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
	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	
C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			
바이오/나노/일렉트로닉스	C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의약품 제외	176,945	A17 ~ A22	
	C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	
	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	
	C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	
	C28	전기장비 제조업			
연구개발	M70	연구개발	17,588	B1	
	M73	기타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			
	P85	교육 서비스업			
친환경 첨단산업 <sup>1)</sup> (메카닉스)	C24	1차 금속 제조업	43,646	C5 ~ C8	
	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;기계 및 가구 제외			
	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
	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	
M72	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				
친환경 첨단산업 <sup>1)</sup> (바이오/나노/일렉트로닉스)	C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의약품 제외	35,886	C1 ~ C4	
	C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	
	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	
	C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	
	C28	전기장비 제조업			
	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
M72	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				
전지역	D35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<sup>2)</sup>	-	-	

주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형공장 및 첨단업종만 입지 가능(복합용지 면적의 50% 적용)

주2)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(D35)은 태양광을 이용한 기타 발전업(D35119)만 허용하되,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는 건축 세부사항(건축물 외벽 또는 지붕에 설치 가능) 준수.

### 2) 업종배치계획도 : 별첨 2

## 라. 용도별 공급방법

구 분	산업시설구역	복합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
면 적(m <sup>2</sup> )	1,190,010	159,064	42,803	734,141
공급방식	분양(실수요)	분양(실수요)	경쟁입찰	경쟁입찰
비 고	공공시설구역의 경우 산업법 및 기타 산업단지 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, 수의로 공급 가능함			

## 마. 입주관리계획

### 1) 입주대상업종

#### 가) 산업시설구역

-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C20~22, C24~C31, M70, M73, P85 및 D35 업종
  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의약품 제외(C20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C21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, 1차 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(C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, 전기장비 제조업(C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, 연구개발(M70), 기타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73), 교육 서비스업(P85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D35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도입 및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전 지역에 설치되는 업종임)
-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(환경평가과-3554)에서 제한한 공해업종은 입주를 제한함
  - 본 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인구가 많은 도심지로 대기오염영향이 가중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C20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은 입주를 배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기·악취영향이 적은 사업(공정)만 입주하여야 함
- 그 외 사항에 대해 입주 시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(환경평가과-3554)에 따라야 함



## 나) 복합구역

-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C20~21, C24~C30, M72 및 D35 업종
  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의약품 제외(C20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C21), 1차 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기계 및 가구 제외(C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, 전기장비 제조업(C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(M72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(D35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도입 및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전 지역에 설치되는 업종임)
-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(환경평가과-3554)에서 제한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
  -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,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, 악취배출시설을 제조·보관·저장·사용하는 업체
  - 주변 주거시설, 학교시설과 인접한 복합구역 내 일정 구간내에는 악취배출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제한하며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별표 10의 1~4종 사업장 및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13의 1~4종 사업장 제한  
(※ 해당구역 표시 : 별첨 2)

## 다) 지원시설구역

- 일반 실 수요자
-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함

## 2) 입주자격

### 가) 산업시설구역

- 「산집법」 제2조 제1호,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

## 나) 복합구역

- 「산집법」 제2조 제1호,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- 「산집법」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
- 「산입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

## 다) 지원시설구역

- 일반 실수요자 및 「산집법」 법률 제2조 제1호의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
- 「산집법」 제2조 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
-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
- 용지별 허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

## 3) 입주우선 순위

### 가) 산업시설구역, 복합구역 :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일반 실 수요자

- 1순위 : 김해시와 투자협약(MOU)을 체결하고,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
- 2순위 : 중견기업 이상업체
- 3순위 : 유치대상업종 중 첨단업종 영위업체
- 4순위 : 재정적 우수기업
- 5순위 : 김해시 3대 전략산업, 12대 신산업 및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업종
- 6순위 : 김해시 이전기업(외부투자기업)
- 7순위 : 공인기관(정부 등) 우수기업 선정 업체

### 나) 지원시설구역 : 일반 실 수요자

#### 4) 입주제한

- 관리기관은 공해다발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미리 그 업종을 공고한 후 입주를 제외할 수 있음
-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,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, 악취배출시설을 제조·보관·저장·사용하는 업체는 일부 입주를 제한함

#### 5) 토지(분할, 분양)최소 한도

- 「산집법」 시행규칙 제39조의3 규정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의 최소 분할면적은 1,650㎡로 하며, 기타구역은 김해 대동 첨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(김해시 고시 제2017-172호, 2017. 6. 29.)을 준용하여 적용하며,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함

#### 6) 입주절차

- 산업시설구역(복합구역을 포함)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중 「산입법」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 제1호에 의거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적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-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「산집법」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

### 바.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

#### 1) 설치계획

구 분	필지수	면 적(㎡)	공급방법	비 고
지원시설	53	42,803	실수요자 분양 (경쟁입찰)	

## 2) 관리운영계획

-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과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하되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규정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함
-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건축법」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규정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- 지원시설 설치 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김해 대동침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(김해시 고시 제2017-172호, 2017. 6. 29.)을 준수하여야 함

## 사. 사후관리 계획

### 1) 목 표

- 산집법,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합리적, 효율적 관리도모

### 2) 세부관리계획

#### 가) 분양용지 관리

-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「산집법」,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
-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「산집법」 제4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입주계약 해지 시 분양 계약은 자동 해지됨
-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(나대지 등)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. 다만,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「산집법」 제39조 제2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
- 「산집법」 제39조에 의거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 이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

-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「산집법」 제38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- 경매,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「산집법」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
-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「산집법」 제41조에 의거 당해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, 「산집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제함
- 분양받은 용지의 지적확정 후 필지를 분할코자 할 경우, 개별공장 부지의 최소한도는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최소한도를 유지하여야 함. 단, 관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

#### 나) 환경관리

-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,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-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·폐수, 대기오염물질,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
-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,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

#### 다) 안전관리

-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 단지 인근에 파출소,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,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
-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와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설치 시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
## 라) 기반시설지원

-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
## 아.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

### 1) 공장설립 지원계획

- 공장설립 업무 인.허가 업무 지원

### 2) 생산활동 지원계획

-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
- 용자자금(산업기반기금, 산업기술개발자금)지원 및 알선
- 인력수급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추진
- 산·학·연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기술지도,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기업 생산성 제고
- 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Net-work구축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보 제공

### 3) 근로자복지사업 계획

- 단지 내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
- 단지 내 근로자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와 기업행사에 활용토록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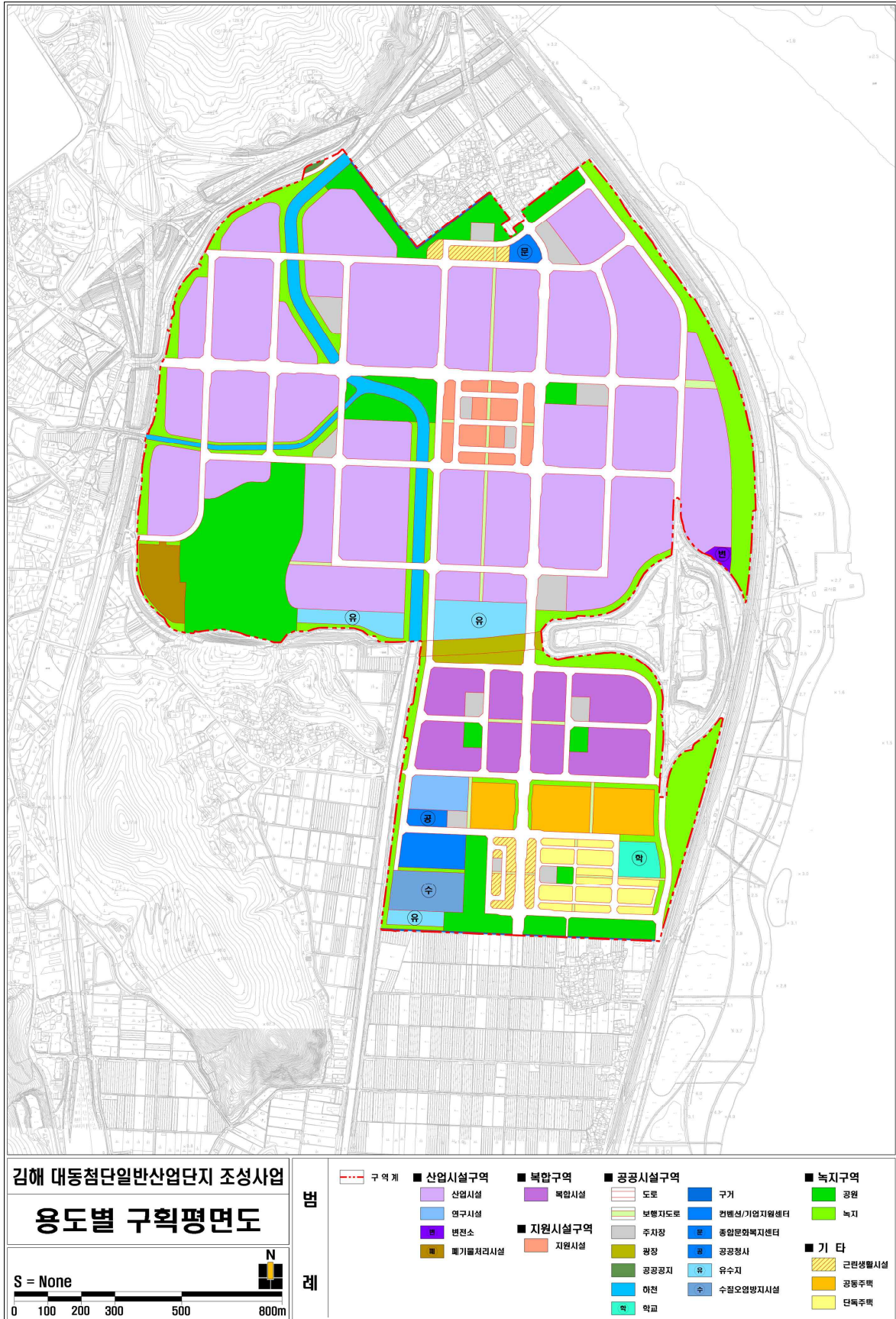
### 4)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

-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
-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
-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

# 붙 임

1. 용도별 구획평면도
2. 업종배치계획도

[별첨 1] 용도별 구획평면도





# [별첨 2] 업종배치계획도

